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6. 7. 조례 제1692호
 일부개정 2005. 5. 10. 조례 제1919호
 일부개정 2006. 2. 24. 조례 제1981호
 일부개정 2008. 11. 7. 조례 제2114호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
 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
 정 2005. 5. 10., 2006. 2. 24.,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7.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
 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